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1
------	------

2021. 9.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9.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 제안이유

-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부칙 제6905호 제2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한시기구의 현황과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8조 제1항)¹⁾.
-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제8조 제4항·5항)²⁾.

1)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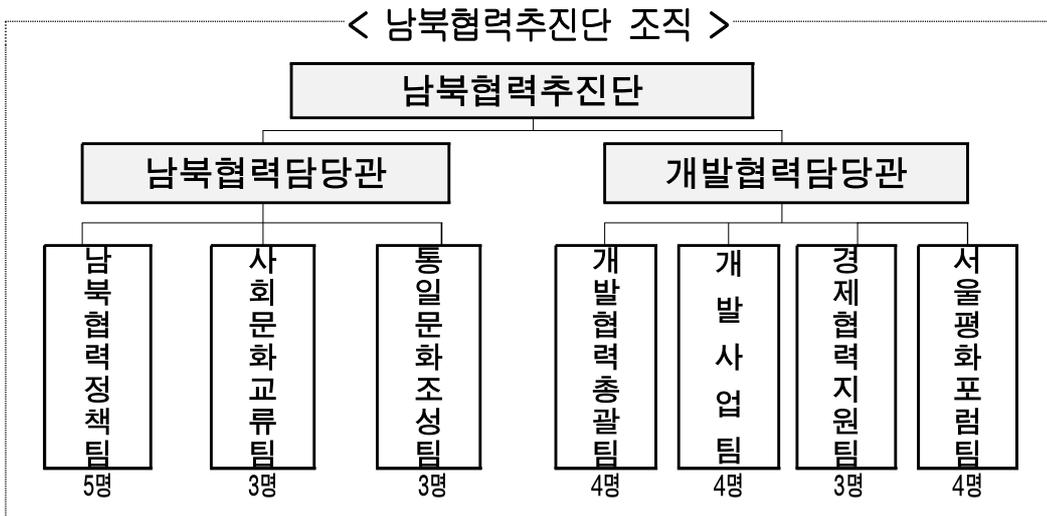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서울시는 현재 한시기구로 ‘남북협력추진단’ 과 ‘문화시설추진단’ 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

부서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남북협력추진단 (3급)	'20.11.1 ~ '21.10.31(1년) ※ 최초신설 : '18.11.1	·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문화교류, 통일기반 조성
문화시설추진단 (3급)	'21.8.19 ~ '22.8.18(1년) ※ 최초신설 : '16.8.19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박물관 건립 및 진흥

- 2018년 11월 신설된 ‘남북협력추진단’ 은 1단·2담당관·7팀(총 29명)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 ▶ 체육·문화·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 평화·통일교육 등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관리, ▶ 서울평화포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동안 ‘남북협력추진단’ 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왔으며, 오는 10월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음.

-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시·도에서 3급 이상의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제21조)³⁾,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기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음.
- 지난 7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한시·임시기구 정비 계획」(2020.3) 이행을 전제로 존속기한 1년 연장(3차)을 조건부 승인 하였음.
- 「한시·임시기구 정비계획」은 한시기구의 정규화 방안⁴⁾과 시장방침으로 운영되는 법외기구(임시기구)에 대한 정비 방안⁵⁾을 포함하고 있음.

< 서울시 법외기구 운영 현황 >

부서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주요업무	비고
국제협력관	시장방침 (2013.12.02)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 등	조기폐지 (2021.7.19.)
환경에너지기획관	시장방침 (2011.11.29.)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기후환경본부장 보좌	

3)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한시기구는 관련성 있는 타 실·국의 산하 부서로 재편해 연차적으로 정규기구화한다는 계획임(지역발전본부 2021년, 문화시설추진단2022년, 남북협력추진단 2023년).

5) 법외기구 중 국제협력관은 폐지하고(2023년), 그 밖에 기구는 연차별로 한시기구화한다는 계획임(재생정책기획관 2021년, 주택기획관 2022년, 환경에너지기획관 2023년).

균형발전기획관	시장방침 (2012.09.28.)	균형발전, 주거환경사업 등 균형발전본부장 보좌	명칭변경 (←재생정책기획관)
주택공급기획관	시장방침 (2011.11.29.)	주택공급 관리, 재정비사업 등 주택정책실장 보좌	명칭변경 (← 주택기획관)

다.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 올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1년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단절되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음.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남북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관계 개선과 핵협상 재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 남북의 정치·군사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문화·경제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유연하게 시행한다면 남북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1.3.9.)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21.8.23.)하면서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게 됨.
- 서울시는 서울-평양 간 도시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 조성과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전담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정치성을 배제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지방정부를 대표해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아직까지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함.

- 한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이양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을 의결한 ‘자치단체 한시조직 직급책정 협의 권한’ (2019.8.23.)은 포함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조직권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인 이양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1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제6905호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7. 29.~8. 2.)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2항”으로, “2021년 10월 31일”을 “2022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칙 <제6905호, 2018. 10. 4.></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u>제21조제3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p>	<p>부칙 <제6905호, 2018. 10. 4.></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u>제21조제2항</u>----- ----- <u>2022년 10월 31일</u>----- -----.</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 순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유 진(02-2133-6729)